

'99年度老人福祉基金運用計劃案 審 查 報 告 書

1. 審 查 經 過

- 가. 提出日字 : 1999. 4. 9
- 나. 提出者 : 瑞 山 市 長
- 다. 回附日字 : 1999. 4. 9
- 라. 上程日字 : 1999. 4. 14

2. 提案說明要旨(提案說明: 社會女性福祉課長 崔鎮珏)

가. 提案理由

-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거 서산시 노인들의 자립기반조성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기금을 조성하고, 효율적인 운영·관리를 도모해 나가고자 하는 계획안임.

나. 主要骨子

【 일반현황 】

- 근 거 : 서산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(제119호, '95.4.17제정)
- 조성목표액 : 10억원
- 조 성 기 간 : 1996 ~ 2000년(잠정)
- 재 원 : 시출연금, 기금운용수익금 등

【 운용방법 】

- 기금은 노인복지기금 계좌를 별도 설치하고, 사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·관리
-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운용기금은 적립기금의 당해 연도 이자수익금 범위내에서 지출하되 이자수입의 10%이상은 기금 증식을 위하여 재적립
- 기금운용·관리를 위하여 노인복지기금운영위원회심의 및 시의회 의결에 의거집행

【 기금조성현황 】

(단위:천원/'98.12.30기준)

연도 구분	시 출연금	예치기관	예 금 명	예 치 기 간	이율	'98 조성액	
						원금	이자
계	500,000					500,000	53,327
'96	200,000	농협사금고	금고우대자유정기에금	'96.12.14~'99.10.8	10%	200,000	38,364
'97	100,000	"	"	'97. 5. 8~'99.10.8	10%	100,000	14,963
'98	200,000	"	자유적립 정기에금	'98. 7. 8~2000.7.8	12.5%	200,000	사기내

※ '99 시 출연금 1억원 확보 : 자금배정후 적립 예정

【 지원대상사업 】

- 충효, 예절등 전통문화 선양사업(노인교육, 충효교실, 백일장등)
- 노인능력은행 및 공동작업장 운영지원
- 노인여가시설 관리·운영에 수반된 비용
- 노인회 지회 운영지원
- 산하 노인회(분회, 노인학교)지원육성
- 사회봉사활동 참여와 지원
- 기타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사항

【 '99 기금사용계획 】

'98년까지 조성금 예치

○ 예치금액	-----	553,327천원
○ 예치기간	-----	'98.7.8 ~2000.7.8(2년)
○ 예치기관	-----	농협중앙회 서산시출장소
○ 예치상품	-----	금고우대 자유정기예금
○ 이 율	-----	10% ~12.5%

'99 집행 내역

○ 사업명	-----	노인회지회 사무실 확보비
○ 지원금액	-----	50,000천원

※ '99노인복지기금운영위원회 심의 : '99.3.12

재적립('99이자발생액)

○ 예치금액	-----	100,000천원
○ 예치기간	-----	'99.4.1~2000.4.1(1년)
○ 예치기관	-----	농협중앙회 서산시출장소
○ 예치상품	-----	금고우대자유정기예금
○ 이 율	-----	8.5%

※ 시금고와 시청과의 계약이율 : 8.5%

3. 專門委員 檢討意見 要旨

- 본 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지방재정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거 「'99년도 서산시노인복지기금의운영계획」에 대하여 서산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
 - 기금설치 목적에서 명시하였듯이
 - 우리시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기금을 조성하고,
- 기금은 노인복지기금 계좌를 시금고에 설치하여
 - 이자수익금의 범위내에서 기금을 운용하는 계획안으로 기금운영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4. 主要質疑 및 答辯要旨 : 생략

5. 討 論 : 없었음.

6. 少數意見 : 없었음.

7. 審査結果 : 원안대로 가결

의안번호	제 82 호
의결년월일	1999. . . (제 회)

'99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

제 출 자	서 산 시 장
제출년월일	1999. 4. 9.

'99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

의안 번호	62
----------	----

제출년월일 : 1999. 4. 9.

제 출 자 : 서 산 시 장

1. 주 문

-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지방재정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거 1999년도 서산시 노인복지기금의 운용계획에 대하여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함.

2. 제안이유

-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거 서산시 노인들의 자립기반조성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기금을 조성하고 효율적인 운영·관리를 도모해 나가하고자 함.

3. 관련법 근거

-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동법 제133조
- 지방재정법 제110조
- 서산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

'99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

□ 기금설치 목적

서산시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하고 효율적으로 운영·관리하기 위함.

□ 일반현황

- 근거 : 서산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(제119호, '95.4.17제정)
- 조성목표액 : 10억원
- 조성기간 : 1996 ~ 2000년(잠정)
- 재원 : 시출연금, 기금운용수익금 등

□ 운용방법

- 기금은 노인복지기금 계좌를 별도 설치하고 시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·관리
-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운용기금은 적립기금의 당해연도 이자수익금 범위내에서 지출하되 매년 이자수입의 10%이상은 기금 증식을 위하여 재적립
- 기금 운용·관리를 위하여 노인복지기금운영위원회 심의 및 시의회 의결에 의거 집행

□ 기금조성현황

(단위:천원/'99.2월말기준)

연도 구분	시 출연금	예치기관	예금명	예치기간	이율	조성액	
						원금	이자
계	500,000					500,000	59,577
'96	200,000	농협시금고	금고우대자유정기예금	'96.12.14~'99.10.8	10%	200,000	38,364
'97	100,000	"	금고우대자유정기예금	'97. 5. 8~'99.10.8	10%	100,000	14,963
'98	200,000	"	자유적립 정기예금	'98.7.8~2000.7.8	12.5%	200,000	6,250

* '99 시 출연금 1억 확보 : 자금배정후 적립 예정

□ **지원대상사업**(조례제10조)

- 충효,예절등 전통문화 선양사업(노인교육, 충효교실, 백일장등)
- 노인능력은행 및 공동작업장 운영지원
- 노인여가시설 관리·운영에 수반된 비용
- 노인회 지회 운영 지원
- 산하 노인회(분회, 노인학교) 지원 육성
- 사회봉사활동 참여와 지원
- 기타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사항

□ **'99 기금사용계획**

'98년까지 조성금 예치

- 예치금액 ----- **총559,577천원**
- 예금현황
 - '96~'97기금 원금 및 이자 : 353,327천원 - 금고우대자유정기예금(10%)
(원금 300,000천원 + 이자 53,327천원)
 - '98 기금 원금 및 이자 : 206,250천원 - 자유적립정기예금(12.5%)
(원금 200,000천원 + 이자 6,250천원)

'99 집행계획

- 사업명 ----- 노인회지회 사무실 확보비
- 지원금액 ----- 50,000천원
 - '99노인복지기금운영위원회 심의 : '99.3.12
- ※ 집행잔액 : 559,577천원 - 50,000천원 = **509,577천원**

'99 기금예치

- 기금액('99예산액) ----- 100,000천원
- 예금명 ----- 금고우대 자유정기예금
- ※ 기금총액 : 509,577천원 + 100,000천원 = **609,577천원**